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

▣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 국내주식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주요내용 및 투자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해외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고객의 해외주식투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외화증권거래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ETF, ETN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1. 해외파생ETF(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 및 모든 해외 ETN 종목은 투자위험도가 일반 해외주식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해당 종목의 투자위험등급은 6등급 중 매우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되며 공격투자형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고객성향이 맞지 않는 고객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성향 등록 및 확인/변경은 아래 문구 참조)
2.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배수로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적하여 배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상품 ETF, ETN 의 경우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상품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상품의 현물가격과 정확하게 연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가격은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적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방법 : HTS #9078, MTS 개인정보의 투자자정보 등록 및 영업점

1. 당사의 해외주식 중개거래는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자(내국인 거주자)에 한하여 이용가능합니다.
2. 해외주식은 투자종목이 다양하고 매매방식, 제비용 등에서 국내주식거래와 차이가 있으며, **투자정보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가격변동에 의한 매매 손익뿐 아니라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한 환차손익 발생 가능)
4.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등과 같은 일부의 국가의 경우 주식은 해당국가의 통화로 거래되지만, 외화 송금 및 결제의 특성상 출금 및 매도대금 회수는 미국달러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종환전 구조에 따른 환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일 매수 환율의 5%를 가산하여 증거금을 징수한 후 결제시점에 차액을 반환합니다.
5. 유럽이나 해외 일부 국가는 같은 거래소 상장된 주식이라도 종목에 따라 제세금이 상이하거나 거래하는 화폐와 다른 이종통화로 징수하는 **제세금**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상장종목은 GBP로 거래하나 상황에 따라 EUR 세금이 징수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종통화 수수료는 환전하여 별도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6. 해외거래소 중 오프라인(전화주문)만 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일종매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매수결

제일 이후 매도할 수 있고, 매도대금을 외국에서 출금하여 당사로 입금시킨 후 고객의 환전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7. 미국 세법상 미국인 또는 FATCA 목적상 보고대상)이하 “미국인 등”이라 한다) 및 캐나다 국적 보유자는 해외주식 매매가 불가합니다. 미국인 등에 해당되거나 해외주식 거래 이후 미국인 등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W-8서식을 작성하여 본 위험동의서의 동의 시점 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및 제출방법 등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국내외 세법 관련 규정의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외주식 거래가 제한됩니다.
- 고객은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변경된 고객정보가 반영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기존 계좌의 계속적인 거래는 불가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미국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사가 추가적인 운용 중단 및 기 편입된 해외주식의 매도거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주식 계좌를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미국인 등의 지위 변동 여부에 대해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가 국내외 과세관청 (미국IRS 포함) 및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 비용, 수수료,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최종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 주식, 채권 등의 자산에서 해당 비용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해외주식 투자 중 외국인으로 국적을 취득((미국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세법 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외 국가로 변경되어 해외주식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자에 적용되는 한-외국간의 협약세율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고객이 세법상 거주자 국가와 외화소득 발생 국가간의 협약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세무자문을 받아 해당 국가에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이 한-외국 조세조약을 부당하게 적용 받은 경우 당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청구 받는 세금, 비용,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에서 차감되거나 고객께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9. 비정상적인 권리 발생, 증권거래소의 장애 및 증권예탁원, 은행, 국내외 통신사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 등 해당 국가의 사유로 주문의 거부 또는 체결 취소, 결제 지연 또는 결제 취소, 시세 지연 또는 미제공, 그 밖의 거래에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장애 발생 시 잔고를 정상으로 원복 처리할 때까지 당사 계좌의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상 거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정상 거래 재개 여부는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무상증자, 배당선택 등 제반권리 발생 시 국제결제 과정 특성상 고객통지 시점이 현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해외주식의 주권분할, 주권병합, 매매거래소의 변경 및 기타사유 등에 의하여 종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 결제 특성상 변경내용의 계좌반영이 지연되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종목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종목 수량이 변동될 시 고객의 명확한 잔고 파악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업무처리 전 당사가 먼저 정상수량을 계좌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단, 선반영 처리 내역이 현지와 불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고객 통지 후 기존 잔고로 원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선반영된 주식의 타사 대체 출고는 최종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정상수량을 반영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12.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3. ADR 종목의 경우 ADR발행회사와 ADR관리기관 사이의 ADR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매매수수료 외 **별도의 보**

관 수수료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4. 해외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하실 때 실시간 시세정보는 유료이며, 거래소 별로 납부하는 실비용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국가의 지연 시세정보는 무료 제공)
15. 해외주식의 경우 매수 체결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 및 미국 현지 결제기관이 정상적인 전자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기타 거래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현지 중개기관 또는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 매매가 제한되거나 매수체결취소, 매수체결된 종목의 매도처리 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은행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미국 PTP종목 매도 시 매도 대금(매도체결금액에서 현지 제비용 차감)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주문가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 미국 PTP과세대상종목 여부 및 세금금액은 결제일 이후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원천징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확정 이전에 조회되는 세금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시점에 PTP과세종목이 아니더라도 추후 과세종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PTP세금이 사후에 출금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좌에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미국 금융 규제당국(FINRA)의 장외(OTC) 종목 매매 규제 강화에 따라 LPS 종목의 매매 시 매수결제 거부 및 보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PS란 "Low-Priced Securities"로 OTCM(OTC Markets Group Inc.)에서 규정하는 특정 종목으로 미국 장외시장에서 5달러 이하 가격에 거래되는 투자위험도 높은 종목으로 매수 시 정규 거래소에 상장되었더라도 결제시점에 장외시장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LPS로 지정되어 매수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